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운송플랫폼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생활물류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산단개발 인허가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철도여객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7급 2명, 8급 2명, 9급 2명)과 지하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및 건설현장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6급 4명, 7급 5명, 8급 4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국토교통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주택토지실 정책관 등 2개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는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고, 택시산업 혁신성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는 한시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2. 1. 00. ~ 1.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제4항 전단 중 “2022년 2월 28일”을 “2024년 2월 28일”로 한다.

제59조 제6항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993”을 “999”로 하고, 일반직 계 “983”을 “98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954”를 “960”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2,543”을 “2,564”로 하고, 일반직 계 “2,543”을 “2,56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534”를 “2,555”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가목 1)의 평가기간란 중 “2022년 3월 31일”을 “2023년 3월 31일”로 한다.

별표 4 제2호에 6), 7),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철도경찰(철도특별사법경찰대)	6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7) 지하 안전 관리(지방국토관리청)	2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8) 건설현장 안전점검(지방국토관리청)	13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국토교통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59조 관련)

1. 제59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이하	1

2. 제59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2월 28일)

총계	4
일반직 계	4
5급 이하	4

3. 제59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총계	3
일반직 계	3
5급 이하	3

4. 제59조제7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이하	1

5. 제59조제8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2
일반직 계	2
5급 이하	2

6. 제59조제9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이하	1
7. 제59조제10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이하	1
8. 제59조제1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9월 30일)	
총계	3
일반직 계	3
4급 또는 5급 이하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한시정원) ① ~ ③ (생략)	제59조(한시정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2년 2월 28일까지</u>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6급 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 ----- ----- ----- ----- <u>2024</u> <u>년 2월 28일</u> ----- ----- ----- ----- ----- -----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u>택시산업 혁신성장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2월 28일까지</u>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⑥ <삭 제>

⑦ ~ ⑪ (생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93</u>	<u>999</u>	+6
•	•	•	
•	•	•	
일반직 계	<u>983</u>	<u>989</u>	+6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954</u>	<u>960</u>	+6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3]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543</u>	<u>2,564</u>	+21
일반직 계	<u>2,543</u>	<u>2,564</u>	+2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534</u>	<u>2,555</u>	+21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8